
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(제2호타목의 경우에는 5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.
- 라.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, 위반행위의 내용·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- 1)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 - 2) 허가취소(제2호가목, 아목 및 자목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)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.
- 마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2호	○ 허가취소
나.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	○ 1차: 사업정지(30일) ○ 2차: 허가취소
다.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4호	○ 1차: 사업정지(30일) ○ 2차: 허가취소
라.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	○ 사업정지(30일)

마.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5호	○ 1차: 사업정지(60일) ○ 2차: 허가취소
바.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)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. 다만,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·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2)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3)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4)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·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)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「도로법」 제77조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6)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6호	○ 1차: 사업정지(20일) ○ 2차: 사업정지(5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1차: 사업정지(20일) ○ 2차: 사업정지(5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1차: 사업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정지(2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1차: 사업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정지(2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1차: 사업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정지(2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사업정지
사. 법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·제4항·제7항,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	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	

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)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60건 이상인 경우 2)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아.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자.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(改任)한 경우는 제외한다. 차.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·제4항·제7항,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)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2)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,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)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4)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·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·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	법 제27조제1항제9호 법 제27조제1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7호	○ 사업정지(30일) ○ 허가취소 ○ 허가취소 ○ 허가취소 ○ 사업정지(10일) ○ 1차: 사업정지(20일) ○ 2차: 사업정지(50일) ○ 3차: 허가취소 ○ 사업정지(10일) ○ 1차: 사업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사업정지(30일)
---	---	--

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		
5)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.5톤 이상의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·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		○ 1차: 사업정지(10일) ○ 2차: 사업정지(20일) ○ 3차 이상: 사업정지(30일)
카.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(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)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8호	○ 사업정지(30일)
타.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	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신고의무미이행률×10일)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신고의무미이행률×20일) ○ 3차 이상: 사업 일부정지(신고의무미이행률×30일)

비고

- 위 표 타목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신고의무미이행률} = \frac{\text{실적 신고 대상 금액} - \text{실적 신고 금액}}{\text{실적 신고 대상 금액}}$$

주)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로 본다.

- 위 표 타목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일수를 계산한 결과 정지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,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.